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2월 2일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3년 2월 3일

다. 상정일자 : 제2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1993. 2. 10)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안 명만 도시개발과장)

가. 제안이유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

나. 주요골자

(1) 공용의 청사

- 위치 : 부산직할시 사하구 신평동 산 26-3번지 일원
- 규모 : 면적 29,973㎡(9,067평)

(2) 도로결정

- 위치 : 기점, 사하구 신평동 19번지~종점, 사하구 신평동 산26-1번지
- 규모 : 폭 20m, 연장 154m

3.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 별첨 자료참조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

○ 최진판 위원(질의)

— 구청사 이전계획과 관련 향후 추진 일정을 제시바람

○ 도시개발과장(답변)

—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3월중 부산시에 시설결정 신청을 한후 시설결정 고시가 되면 구체적 청사이전 계획이 수립될 것임.

○ 박수관 위원(질의)

- 예정 부지주변 진입도로 개설이 선행되지 않고는 교통소통에 따른 문제가 있음. 따라서 동매교~신평어린이 놀이터간 30m 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바람.

○ 도시개발과장(답변)

- 기 구자체에서 시관계 부서에 건의한 바 있으며, 본 계획도로 개설이 선행되지 않고는 청사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시행부서인 시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건의도 되어 있어 아마 금명간 개설이 될 것으로 예상함.

○ 구본춘 위원(질의)

- 배고개에서 청사예정 부지까지 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 도로를 폭 20m로 확장 되도록 입안되어 있는데 향후 차량증가 추세 및 민원수요 등을 감안 30m로 확대 입안할 용의는?

○ 도시개발과장(답변)

- 청사에 진입하는 차량들로 한정되어 있고 현행 청사 진입로가 12m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주차만 하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또한 30m로 확장할 시 토지소유자의 반발과 구예산이 수반되어 여러가지 불필요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 20m로 입안하였습.

○ 이석래 위원(질의)

- 현재 계획 입안상 9,067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기소, 의회, 도서관, 주차장 등 종합 복합 건물로 건립 추진되어 종합행정 기관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려면 다소 협소하다고 보는데 부지를 10,000명 이상으로 확대지정하여 잔여 부분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 직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 도시개발과장(답변)

- 현 청사부지의 6.5배 그리고 국민학교 3.5배 정도되면 주차장 문제, 기구확대문제, 직원 휴식공간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충분한 면적이라고 생각되며, 만일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건물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음. 또한 불필요한 면적을 확대 지정하면 개인 재산권 침해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임.

○ 신준식 위원(질의)

- 청사 예정부지에 사하동기소를 법원과 협의하여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 도시개발과장(답변)

- 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공공의 청사로 사하구청 부지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시설결정이 된 후 일정한 장소에 임차해 주어 등기소를 유치하는 문제와 법원에서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하는 방안중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복합 업무시설을 한 곳에 유치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인 만큼 향후 법원과 협의 추진 하겠습.

○ 신준식 위원(질의)

- 토지 매입에 따른 지주들의 반발을 사전에 예상하여 향후 재결신청까지 고려하여 볼 때 현재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도시계획 공람공고, 주민의견 청취 등이 관계법에 의한 적법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제시바람.

○ 도시개발과장(답변)

- 도시계획입안, 결정과 관련 건설부, 부산시, 구청등 관련부서에서 감론을박하는 것이 다소 있습니다. 물론 협의 보상을 염두에 두어 법규상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되겠으며, 공람공고 절차 의견 청취 절차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소유자 개별 통지 방안은 입안단계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법규상 규정이 없어 신문 공람공고로 갈음하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 최진관 위원(질의)

- 오늘 의안이 주민의견 청취인지 아니면 도시계획법 제12조1항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인지 답변바람.

○ 도시개발과장(답변)

- 입안권은 구청장이며 결정권은 부산시장임. 그래서 구의회 차원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로 간주, 주민대표인 의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임.
향후 신청시 부산시 의회에 의견 청취도 수반되는 사항임.

5. 토론요지 : (이석래 위원)

우리구 청사이전 계획과 관련 도시계획법에 의거 명시된 예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따른 신청 사항으로 사전부지 검토 단계에서 의회의 의견 제시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의 안대로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6. 심사결과 : 원안의결(찬성 7명, 반대 0명)